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,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정주여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(안 제19조의4)

-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(10호 이상)으로 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 제한(10호 미만인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수당 30미터를 더한 거리 이격)

※ 특정건축물 : 자원순환관련시설(나목부터 마목까지만 해당한다) 및 제26호 묘지관련시설(라목만 해당한다)

○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

-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면적 기준 마련(안 제13조)
- 용적률 완화 사항 개정(안 제54조)
-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(안 제75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규제심사 : 개선사항 없음 [기획감사실-379('19.1.10.)]
○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 [주민복지과-3186('19.1.14.)]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 (예고기간 : '19.1.17. ~ '19.2.7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

○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묘지관련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거지역 으로부터 거리 제한기준을 신설하고,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